총포 수리업 허가신청 안내 매뉴얼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Guns & Explosives Safety Technology Association

【 목 차 】

1. 총포 수리업 허가신청 안내 ····· 3

2. 수리업의 시설기준(전용면적 · 시설설비) ····· 5

3. 수리업 시설설비 관련 참고자료 사진(예시) ····· 6

4. 서식 ····· 10

5. 협회의 기술검토 의견서(신규 또는 변경 허가 신청시) ····· 11

6. 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완성검사 신청시) ····· 12

○ 붙임.1 총포수리업 허가신청서 ····· 13

○ 붙임.2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 신청서 ····· 15

○ 붙임.3 완성검사 신청서 ····· 16

1 총포 수리업 허가신청 안내

□ 허가대상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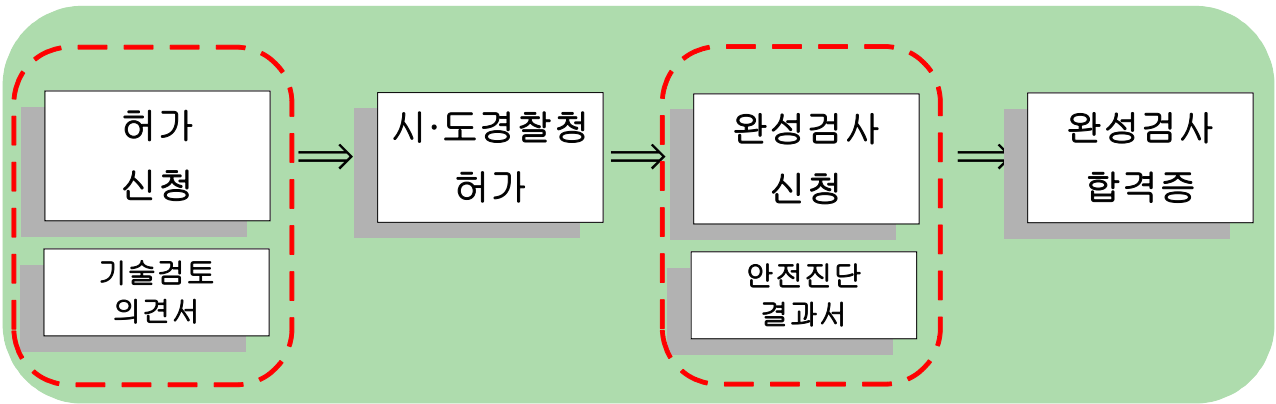
○ 총포 수리업

○ 수리업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

□ 허가권자 (법 제4조)

○ 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장

□ 허가절차



○ **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완성검사에 합격하여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음.**

○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및 안전진단결과서는 허가관청의 요구시 제출**

□ 허가신청 서류 〔수리업 허가, 시행규칙 제6조〕

○ 신청 : 사업장 관할경찰서 생활질서계(총포담당)

○ 구비서류

1. 총포수리업 허가신청서.(총포화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함
     가. 수리방법
     나. 수리총포의 보관 또는 저장방법
     다. 자본금
     라. 전문기술공의 고용사항
     마. 그 밖의 참고사항
4. 위해예방계획서 1부.(시행규칙 [별표3])
5. 안전교육계획서 1부.(시행규칙 [별표13])
4.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
5.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각1부.
6. 정보공개동의서(서울시·도청 확인)

□ 완성검사 〔법 제43조, 시행규칙 제51조〕

수리업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허가관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완성검사 신청 서류

○ 시설기기 배치도 1부.

○ 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1부.(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첨부)

2 수리업의 시설기준(전용면적 · 시설설비)

□ 전용면적 - 관련법령(시행령 제8조)

○ 총포 수리업 작업장 면적 : 전용면적 23.1제곱미터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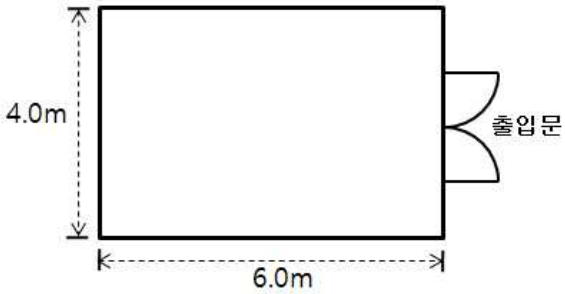
□ 설비기준 - 관련법령(시행령 제8조제2호가목 관련, 별표3)

총포의 개조 · 수리시설 작업장 설비기준

종별	일 반 설 비	검 사 설 비	보관설비
총포	드릴머시인(공기총·산업총의 경우 제외) 구라인다 전기드릴 바이스	압력측정기 부록게이지 (공기총·산업총의 경우 제외)	철제금고 또는 캐비닛, 총기격납고

3 수리업 시설설비 관련 참고자료 사진(예시)

1. 면적



수리업 전용면적: 24m²(4.0mX6.0m)

○ 판매를 위한 전용면적은 23.1㎡ 이상을 갖추어야 함.
(전용면적을 거리측정기 등으로 실측)

2. 일반설비

드릴머어신	구라인다	전기드릴	바이스
			

3. 검사설비

압력측정기	부록게이지
	 

○ 부록게이지는 버니어캘리퍼스로 대체 가능함.

3. 보관설비

 철제금고(예시)	 철제금고(예시)	 총기격납고(예시)

○ 철제금고 또는 총기격납고를 설치하여야 함.
총기격납고(철근콘크리트)의 출입문은 철제문으로 하고 자물쇠장치는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

6. 출입구의 문 · 창 등



출입구의 문과 창



방범창이 설치된 창문

○ 판매장 출입구에 유리문과 창이 있을 경우 강화유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창문의 경우는 방범창을 하여야 함.

7. 출입구 바깥문



철제셧터



철제방화문

○ 출입구에 철판제문을 설치하고 자물쇠장치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

- 출입구 유리문 바깥에 설치가 어려울 경우 출입구 안쪽으로 설치 가능.
- 유리문이 없는 건축물 경우 철제방화문 등으로 설치.

8. 경보장치



경보시스템



열감지센서



CCTV

○ 경찰서, 지구대 등과 경보시설을 설치하거나 경비업체의 경보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수리업소를 나타내는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함. (법 제64조)

※ 간판을 제외한 수리시설은 전용면적 내 설치(비치) 하여야 함.

4 서식

※ 수리업 허가 관련 서식은 협회 홈페이지(자료마당-서식다운로드-총포)에 있음.
https://www.gesta.or.kr/data/gun_list.php?kind=application_gun&kind_sub=list

※ 관련 법령은 협회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음.
https://www.gesta.or.kr/data/law01.php?kind=law

□ **붙임 1. 총포 수리업 허가신청서**

□ **붙임 2.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 신청서**

□ **붙임 3. 완성검사 신청서**

5 협회의 기술검토 의견서(신규 또는 변경 허가 신청시)

□ 협회 기술검토의견서

◇ 신청절차

1. 협회 홈페이지-자료마당-신청서-총포서식다운로드에서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 신청서 내려받기

2. 기술검토에 체크하고 신청인등 내용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

3. 협회 총포안전처에서 접수 확인후 신청인과 기술검토 일정을 협의하여 수리업을 하고자하는 장소에 현장방문하여 실사

4. 기술검토의견서를 문서로 받은 다음 수리업 허가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제출(수리업 등의 신청서 구비서류 참조)

○ 협회의 기술검토는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8조 및 제2호 관련, [별표3] 수리시설 설비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기술검토시 수리를 위한 전용면적 측정을 중점으로, 전용면적외 시설과 방범상 보완할 시설 등을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후 갖추도록 의견서를 문서로 발송함.

6 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완성검사 신청시)

□ 협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2호)

◇ 신청절차

1. 협회 홈페이지-자료마당-신청서-총포서식다운로드에서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 신청서 내려받기

2. 안전진단에 체크하고 신청인, 허가사항 등 내용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

3. 협회 총포안전처에서 접수 확인후 신청인과 안전진단 일정을 협의하여 허가받은 판매업 장소에 현장방문하여 실사

4.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문서로 받은 다음 완성검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제출(완성검사의 신청 구비서류 참조)

○ 협회의 안전진단은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8조 및 제2호 관련, [별표3] 수리시설 설비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안전진단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후 진행하므로 시설기준, 허가시 허가조건, 기술검토시 보완사항 등을 확인하여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문서로 발송함.

붙임1 **수리업 허가신청서**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0.22>

총포 개조·수리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상 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수리업소명	수리업 소재지 (전화번호 :)	
	수리종류	월간수리예정량	저장방법
	종업원수	영업개시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총포 개조·수리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해예방계획서 1부 4. 안전교육계획서 1부 5. 정관과 대표자·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수수료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유의사항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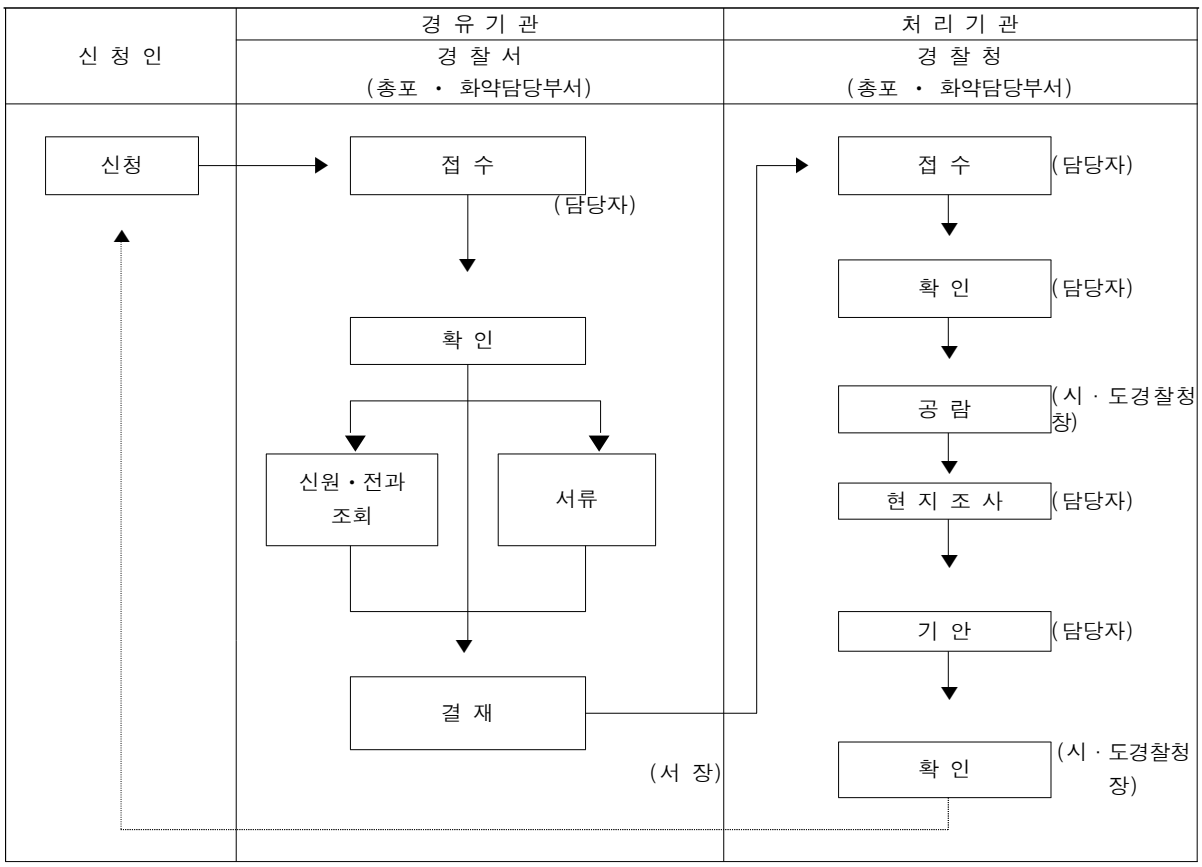
나. 수리총포의 보관 또는 저장방법

다. 자본금

라. 전문기술공의 고용사항

마. 그 밖의 참고사항

처리절차



붙임2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 신청서

□ 기술검토 □ 안전진단 신청서	선결		지시		
	접수 일자		결재·공람		
	접수 번호				
	처리부서	총포안전처			
	담 당 자				

① 신 청 인	성 명/회사명	(Tel: Fax:)
	주 소	(우편번호:)
② 시설의 종류		
③ 허 가 사 항		
④ 기 타		

* 위와 같이 시설(제조, 수리, 판매, 임대, 사격장)의 □ 기술검토 □ 안전진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사장 귀하

※ 구비 서류
1. 허가증 1부
2. 기술지원비 입금 확인서 1부
   가. 계좌은행 : 하 나 은 행
   나. 계좌번호 : 168 - 910004 - 02804
   다. 계 좌 명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라. 수 수 료 : 제조업소[825,000원(부가세 포함)], 수리, 판매, 임대업소[385,000원(부가세 포함)]
   사격장[종목당 495,000원(부가세 포함)]

* 홈페이지 WWW.GESTA.OR.KR
TEL : 02-3272-4102
FAX : 02-3272-4101

붙임3 **완성검사 신청서**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5.31>

완성검사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법인	명칭	
	주소 (전화번호 :)	
허가 번호		허가 연월일
업소명		대표자 성명
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준공 연월일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연월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찰 청 장
시·도경찰청장 귀하
경 찰 서 장

첨부서류	1. 시설기기 배치도 2. 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